

1. 국가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1.1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설명

개요/인용

태국의 산업안전보건(OSH)은 1964년에 41명의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망간 중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2차 국가경제사회개발(1967-1971)에 이 사항이 통합되었다. 1972년에 최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혁명당 포고령 제103호” 하에 규정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 관한 일련의 장관 고시가 이 포고령에 따라 발표되었다. 그 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이 공포되면서 전술한 포고령을 대체했다. 특정 장인 “제8장 - 산업 안전, 보건, 환경”으로 이 법은 안전보건 규정의 더 나은 기반을 제공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수의 부령이 또한 이 법에 따라 발표되었다.

태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의 획기적인 사건은 2010.12에 내각 결의에 의해 승인된 “산업안전보건환경법, 불기 2554 (2011)”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의 공포였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2011.07.16. 이후 발효되었고, 그 결과 1998년 노동보호법의 제8장과 하위 법령들은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과규정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부령, 고시 또는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 제8장에 따라 발표된 부령이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998년 노동보호법 제8장에 따라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다수의 부령이 여전히 발효되고 있다.

1. 밀폐공간에서 산업 안전, 보건, 그리고 작업환경의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2. 이온화 방사선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3.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4. 잠수 작업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8 (2005)
5.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
6.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의 사양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7. 건설 공사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1 (2008)
8. 기계, 크레인, 라디에이터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2 (2009)

9.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No.2), 불기 2553 (2010)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부령이 현재 작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곧 발효될 것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부령이 발표되었다.

1.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5 (2012)
2.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6 (2013)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산업안전보건의 개발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의 모든 산업안전보건 법률은 필요에 따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용의 범위도 농업 근로자와 재택 근로자 같은 비공식적 근로자뿐 아니라 여성과 연소자 근로 보호의 더 많은 측면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노동보호법 (No. 4), 불기 2553 (2010).

1998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건설 공사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1 (2008).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5 (2012).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56 (2013).

이온화 방사선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

밀폐공간에서 산업 안전, 보건, 그리고 작업환경의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부령 (불기 2549).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No.2), 불기 2553 (2010).

잠수 작업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

2. 적용 범위 및 예외

2.1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안전보건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은 업무에서 발생되거나 업무와 관련되는 생명, 신체, 정신 또는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는 어떤 원인으로부터도 안전한 활동이나 작업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보건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2.2 근로자의 정의

개요/인용

“근로자”는 직위에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또한 사용되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위해서나 사업주의 시설에서 근로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가되어 있는 자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2.2.1 특정 분류의 근로자의 범위

개요/인용

어떤 범주의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자가 그러하다.

2.2.1.1 이주근로자

개요/인용

“근로자”는 직위에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또한 사용되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위해서나 사업주의 시설에서 근로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가되어 있는 자다.

비고/해설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이주근로자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의 많은 이주근로자는 법적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고 따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2.2.1.2 가사근로자

비고/해설

2012년 11월에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의거하여 발표된 부령 제14호, 불기 2555 (2012)가 태국에서 가사근로자의 사업장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비즈니스 업무가 아닌 가사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노동보호법 하에서 제공되는 일부 권리와 보호를 가사근로자에게 확대한다. 즉, 매주 휴일(주휴), 전통적인 공휴일, 병가 및 업무 종료의 경우, 가사근로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금전적 지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노동보호법에 의해 정해진 일반적인 최소 고용 연령이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안이 강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여러 측면을 가사근로자 협약 2011 (제189호) 및 권고사항(제201호)에 맞추고 있다.

참고자료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부령 제14호, 불기 2555 (2012).

2.2.1.3 재택근로자

개요/인용

태국에서 재택근로자는 재택근로자보호법, 불기 2553 (2010)에 의해 보호된다. 특히 이 법은 임금과 근로 중 산업안전보건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군에 대

한 사업주의 책임을 포함해 재택근로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장인 “제4장 - 근무 중 안전”으로 이 법은 재택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보호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다음 사항이 이 장의 주요 요점이다.

- 제20조는 임산부 또는 15세 미만 연소자가 건강과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제21조는 다음 작업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약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유해 물질 관련 작업
 - (2) 위험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구나 기계 관련 작업
 - (3) 위협할 수 있는 열이나 냉기를 발생시키는 작업
 - (4)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작업
- 제22조는 재택근로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장비 또는 기타 물건의 공급이나 인도를 금지한다.
- 제23조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 사용되는 원자재나 기타 장비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재택근로자에게 경고하고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안전 보호 장비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제24조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상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 의료비, 재활비 및 장례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재택근로자 보호법, 불기 2553 (2010). (§ 20-§ 24)

2.2.1.4 자영업자

비고/해설

태국에서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신분도 근로자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공식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8월에 노동보호복지국은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비공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비공식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장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지침

2.3 사업주의 정의

개요/인용

“사업주”는 금전적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1) 사업주를 대신하도록 사업주에 의해 지정된 자
- (2) 사업주가 법적 실체인 경우, 이 용어는 또한 그 법적 실체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자 및 그 법적 실체에 대해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정된 자를 포함
- (3) 사업 운영자가 일괄지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의 감독 및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에 책임 있는 자를 임명하거나, 취직 알선업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인원을 임명하고 이와 같은 일이 해당 사업 운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생산 프로세스 또는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일 때, 이 사업 운영자 또한 그 근로자의 사업주로 간주된다.

또한 “사업주”는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시설에서 일부든 전부든 일하고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의 생산 프로세스나 사업의 일부를 시키는 기업가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2.4 업종별 예외

2.4.1 농업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법하의 정의상 근로자인 농업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농업 부문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부령, 불기 2547 (2004)이 있다. 이 부령은 연중 내내 고용되는 농업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과 휴일, 병가 등의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

비고/해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인 농업 근로자는 “노동보호복지국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지침
농업 부문의 노동 보호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

2.4.2 건설업

개요/인용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건설 활동과 관련해 산업 안전보건 관리의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효된 여러 부령이 있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의 사양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1(3)조)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제2장)
건설 공사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51 (2008).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의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No.2), 불기 2553 (2010).

2.4.3 서비스업

비고/해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든 분야의 시설과 기관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부령에 규정된 특별 업종 제외) 범주의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

2.4.4 공공 부문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중앙 행정기관, 주 행정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
- (2)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기업

중앙 행정기관, 주 행정기관, 지방 정부 행정기관과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기업은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 기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것보다 기준치가 낮아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

2.4.5 기타

비고/해설

특정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2.5 산재사고의 정의

개요/인용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용어인 “업무상 상해”는 보상 청구를 목적으로 근로자 보상법, 불기 2537 (1994)에 정의되어 있다.

“업무상 상해”는 고용의 결과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 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나 사망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업무상 상해 사례는 다음 범주에서 심각도에 의해 보고된다.

- (1) 3일 미만의 휴무를 초래하는 상해
- (2) 3일 이상의 휴무를 초래하는 상해

- (3) 일시적인 장애나 장기의 상실을 초래하는 상해
- (4)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
- (5) 사망을 초래하는 상해

참고자료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06.15. (§ 5)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용어인 “질병”이 보상 청구를 목적으로 근로자 보상법, 불기 2537 (1994)에 정의되어 있다.

“질병”은 작업의 성격 또는 조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관련 질병의 결과로 근로자가 겪는 병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하에 발표된 질병 목록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06.15. (§ 5)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환자나 부상자의 능력 상실의 결정과 평가에 관한 기준에 관한 노동사회복지부의 고시.

2.6.1 업무상 질병 목록

개요/인용

2010년 7월에 업무상 질병의 개정 목록이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하에 발표되었다. 이 고시는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질병은 다음과 같이 8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1)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 1)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3) 인 또는 그 화합물
 -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5) 망간 또는 그 화합물
- 6)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7)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8) 납 또는 그 화합물
- 9) 불소 또는 그 화합물
- 10) 염소 또는 그 화합물
- 11) 암모니아
- 12) 이황화탄소
- 13) 탄화수소의 할로젠 유도체
- 14) 벤젠 또는 그 유도체
- 15) 벤젠의 니트로와 아미노 유도체
- 16) 이산화황 또는 황산
- 17)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다른 형태의 질산
- 18) 알코올, 글리콜 또는 케톤
- 19)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 황화수소
- 20) 아크릴로니트릴
- 21) 질소 산화물
- 22) 바나듐 또는 그 화합물
- 23) 안티몬 또는 그 화합물
- 24) 핵산
- 25) 치아 질환을 일으키는 무기산
- 26) 의약품
- 27) 탈륨 및 그 화합물
- 28) 오스뮴 또는 그 화합물
- 29) 셀렌 또는 그 화합물
- 3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1) 주석 또는 그 화합물
- 32)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33) 오존, 포스진
- 34) 벤조퀴논 또는 다른 각막 자극제 같은 자극성 물질
- 35) 살충제
- 36)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및 글루타 알데히드
- 37) 다이옥신
- 38) 직업성 노출과 질병 간 연관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화학물질

(2)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 1) 소음성 난청
- 2) 진동 노출로 인한 질병
- 3) 감압증
- 4) 이온화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5) 열복사로 인한 질병
- 6) 자외선으로 인한 질병
- 7) 다른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 8) 빛이나 전자파에 의한 질병
- 9) 극한 온도로 인한 질병
- 10) 직업성 노출과 질병 간 연관성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물리적 인자

(3) 오염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직업에서 감염된, 감염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4) 직업성 호흡기 질환

- 1) 광물 분말로 인한 진폐증 (예: 규폐증, 석면증)
- 2) 중금속 먼지로 인한 기관지 폐질환
- 3) 먼 분진으로 인한 면폐증
- 4) 인정되는 감작원 또는 자극제에 의한 직업성 천식
- 5) 유기 분진의 흡입으로 인한 외인성 알레르기성 폐렴
- 6) 철침착증
- 7) 만성 폐쇄성 폐질환
- 8) 알루미늄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해 발생하는 폐질환
- 9) 사업장에서 감작원 또는 자극제에 의한 상기도 장애
- 10) 직업성 노출과 질병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호흡기 질환

(5) 직업성 피부 질환

- 1) 기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병
- 2) 직업성 백반

(6) 작업 활동 또는 특정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성 근골격계 장애

(7) 다음 인자에 의한 직업성 암

- 1) 석면

- 2) 벤지딘 또는 그 염
- 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CME)
-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5) 콜타르, 콜타르 피치 또는 그을음
- 6) 베타 나프틸아민
- 7) 염화비닐
- 8) 벤젠 또는 그 독성 동종
- 9) 벤젠 또는 그 동종의 독성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10) 이온화 방사선
- 11) 타르, 피치, 역청, 광유, 안트라센, 또는 그 화합물, 이러한 물질의 생성물 또는 잔류물
- 12)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 13) 니켈 화합물
- 14) 목재 분진
- 15) 직업성 노출과 질병 간 연관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인자에 의한 암

(8) 앞의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작업에서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증명된 기타 질병

참고자료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2.6.2 그 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체계

비고/해설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 의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의료분야의 자격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사례를 의료위원회에 제출해 검토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참고자료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06.15. (§ 38-§ 43)

3.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

3.1 산업안전보건 담당 국가기관

개요/인용

노동부의 노동보호복지국(DLPW)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노동보호복지국 산하에 직접적인 담당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부”이다. 산업안전보건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국(OSHID)과 국립 작업환경 개선연구소(NICE)의 두 기관을 병합하여 노동보호복지국의 조직과 권한을 재구성하여 설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부의 설립은 관보에 발표되었고 2009.12.11. 이후 업무가 개시되었다.

참고자료

노동보호복지국 조직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2 (2009). (제3조)

3.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 기관의 임무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도록 지원
- 용이한 업무 진행 위해 지역센터로 업무 분산
- 업무 중복 감소
- 네트워크 참여 중시 및 궁극적 성과 달성 위해 “근로자의 양호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가적 어젠다를 추진하는 주관 기관의 역할 수행

산업안전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제정 및 개발
- (2) 사업주, 근로자, 관련 개인, 법인 또는 관련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
- (3)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기준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의 인증, 등록 및 감독 관련 서비스 제공
- (4) 산업안전보건 보호, 검사, 관리 대책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 (5) 산업안전보건 정보기술시스템과 네트워크 개발
- (6) 산업안전보건 문제 파악을 위한 연구 또는 조사의 수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기준을 더 채택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 (7)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개발과 참여 독려
- (8) 관련 기관들의 할당된 기능 조정 또는 지원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중앙 및 지방에 설립된 12개의 지역 산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주 수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와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76개의 주(州) 노동보호복지사무소가 있다. 또한 방콕 도시권(BMA)에는 각 구역에서 노동보호와 복지 업무를 맡아보는 총 10개의 노동보호복지사무소가 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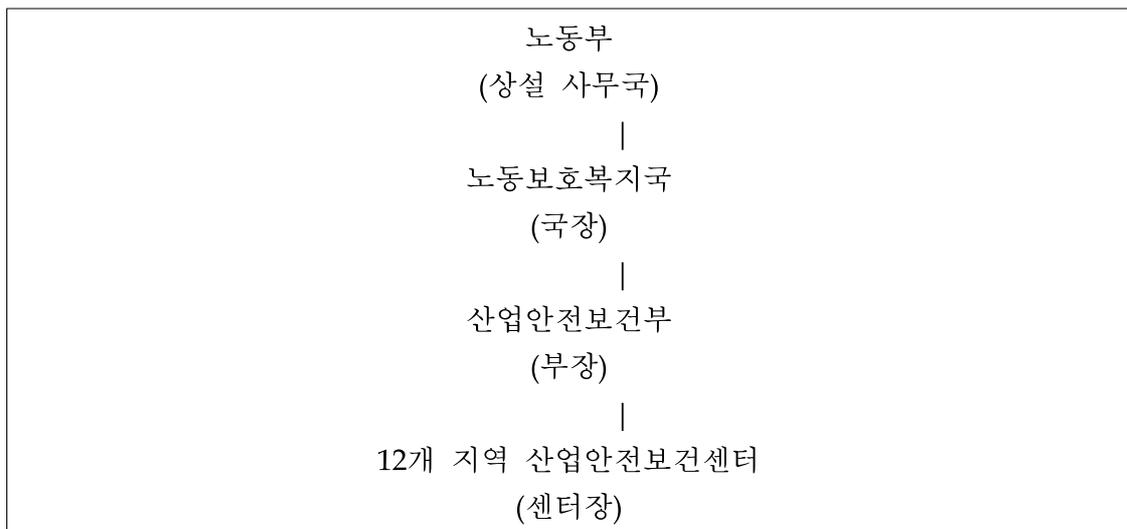
노동보호복지국 조직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2 (2009). (제10조)

3.1.2 의장 및 구성

개요/인용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담당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임명하고, 이 문서에 실린 요율을 넘지 않는 수수료를 정하고 또한 이 수수료의 면제를 정하는 부령을 발령하는 것을 포함해,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부령과 고시, 규칙을 발령할 권한이 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 조직과 관리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5)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에 의해 “산업안전보건환경 증진 연구소”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활동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능 조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비고/해설

이 연구소는 노동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 기관일 것이다. 이 연구소의 설립은 아직 진행 중이고, 2014년 말에 가동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52)

3.2.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증진 연구소는 다음 목적과 역할/기능을 가진다.

- (1)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2)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의 제정을 촉진한다.
- (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른 기관들을 조정하거나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한다.
- (4)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준비한다.
- (5) 관련 법에 규정된 다른 활동들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52)

3.2.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 증진 연구소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특별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노동보호복지국의 공무원과 직원이다. 이 연구소가 설립된 후에 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 연구소의 직원이 될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3.2.3 예산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 증진 연구소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일단 이 연구소가 공공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자금 조달과 연간 예산의 원천은 자체 운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예: 서비스 수수료, 이익, 기부금 등)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요/인용

노동부는 “근로자의 양질의 안전과 보건”을 국가 정책으로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007.12.11.에 내각은 이 정책을 모든 관련 부문에 적용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어젠다로 발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국가 산업안전보건 어젠다는 다음 7개의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2007-2016).

- (1)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에 따라 증진 되도록 한다.
- (2)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따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식과 지식을 높인다.
- (4) 산업재해와 상해의 비율을 줄인다.
- (5) 근로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개발한다.
- (6)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체계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 (7) 근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2012 - 2016)이 앞의 국가 어젠다를 위한 실행계획과 함께 개발되었다. 이 국가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5개 전략을 포함한다.

- 전략 1: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으로 노동 보호 증진
- 전략 2: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역량의 증진 및 강화
- 전략 3: 산업안전보건 지식의 개발 및 관리
- 전략 4: 산업안전보건 정보 시스템의 개발
- 전략 5: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개발

앞의 산업안전보건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었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2012 - 2016)

3.3.1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

개요/인용

국가 산업안전보건 종합계획의 모니터링, 평가, 검토를 포함한 관리 메커니즘이 연 2회 실시되고 있다(프로젝트 계획의 검토는 연 1회). 이러한 활동은 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위원회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어젠다 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소위원회나 실무그룹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은 20여 개의 관련 기관/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 국가 종합계획의 이행 경과와 도출된 성과는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산업안전보건증진위원회에 제시되어 더 검토될 것이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2012 - 2016)

4.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4.1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의 일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을 포함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를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때, 사업주가 그러한 조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6)

4.2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3조에 따라 노동보호법하의 주계약자와 하위계약자는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하위계약자인 사업주가 그 다음 하위계약자를 가질 때, 자

신들의 근로자들이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그 다음 하위계약자와 주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3)

4.3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 간의 협업

개요/인용

동일 사업장(즉, 같은 건물)에 2인 이상의 사업주가 있는 경우, 모든 사업주는 산업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에 의거하여 발령된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5 (2012) 제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같은 건물에 있는 시설의 모든 사업주는 화재 예방 및 소화 시스템 제공과 이 건물의 화재 예방, 소화, 대피 계획의 개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참고자료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5 (2012). (§ 5)

4.4 작업 관련 근로자의 보건 감독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에 따라 현재 유효한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은 사업주에게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건강검진은 산업의학을 전공한 면허 있는 의사 또는 산업의학에 대해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노동보호복지국 국장의 공고에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검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이후의 건강검진은 적어도 연 1회 실시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는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건강검진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자신의 서명을 기입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이상이 발견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더 나아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예방 목적으로 이상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정부 병원 또는 정부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로자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충분한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근로자의 업무 전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언제나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 근로자의 기록은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고소가 없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질병이나 유해성 관련 소송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주의 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고소나 소송이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주는 이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해로운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8)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4.4.1 감독이 요구되는 특정 유해성

개요/인용

건강검진은 업무 관련해 특정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요구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 위험 요인”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1) 유해 화학물질
- (2) 바이러스, 세균, 진균 또는 다른 미생물일 수 있는 독성 미생물
- (3) 방사능
- (4) 열, 추위, 진동, 대기압, 빛, 소음 또는 유해할 수 있는 기타 환경

특정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유해 화학물질 리스트가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에

따라 발표되었다.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을 범주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해 유기용매

- 1) 글리콜
- 2) 글루타르알데히드
- 3) 클로로포름
- 4) 케톤과 메틸 에틸 케톤
- 5) 나프타
- 6) 벤지딘과 그 염
- 7) 벤젠과 크셀렌, 톨루엔, 스티렌과 같은 그 유도체
- 8) 벤조퀴논
- 9)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 10) 베타 나프틸아민
- 11) 프로판
- 12) 포름알데히드
- 13) 페놀
- 14) 메탄올
- 15) 염화메틸렌
- 16) 아이소사이안화 메틸
- 17) 트리클로로에틸렌
- 18) 아크릴로니트릴
- 19) 아세톤
- 20) 아세토니트릴
- 21) 에테르
- 22) 에틸 아세테이트
- 23) 이염화 에틸렌
- 24) 이소프로필 알코올
- 25) 헥산과 시클로헥사논 같은 그 유도체
- 26) 히드로퀴논

(2) 유해가스

- 1) 염소 또는 그 화합물
- 2) 일산화탄소
- 3) 이산화황
- 4) 포스진
- 5) 불소 또는 그 화합물
- 6) 염화비닐

- 7) 질소 산화물
- 8) 에틸렌옥사이드
- 9) 암모니아
- 10) 황화수소
- 11)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

(3) 유해 분진, 흙 또는 금속 분말

- 1)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 코발트 또는 그 화합물
- 3)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4) 은
- 5) 셀렌 또는 그 화합물
- 6) 주석 또는 그 화합물
- 7) 납 또는 그 화합물
- 8)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9) 탈륨 또는 그 화합물
- 1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11)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12)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13) 안티몬 또는 그 화합물
- 14) 망간 또는 그 화합물
- 15) 바나듐 또는 그 화합물
- 16)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17)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8) 철
- 19) 알루미늄 또는 그 화합물
- 20) 오스뮴 또는 그 화합물
- 21)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

(4) 유해 산

- 1) 황산
- 2) 무기산
- 3) 질산

(5) 살충제

- 1) 유기인제
- 2) 카르바미염

- (6) 기타 유해 화학물질
 - 1) 이황화탄소
 - 2) 실리카
 - 3) 석탄
 - 4) 광유
 - 5) 콜타르 피치
 - 6) 세일유
 - 7) 아마면과 대마 분진
 - 8) 목재 분진
 - 9) 인 또는 그 화합물
 - 10) 유리섬유
 - 11) 다이옥신
 - 12) 석면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2)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

4.5 작업 환경 및 작업 관행의 감독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관리, 감독의 목적을 위해,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은 사업주가 다음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1) 유해성 평가 실시
- (2)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조건의 영향에 관한 연구 실시
- (3) 근로자와 시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운영 계획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계획의 수립
- (4) 상기 (1), (2), (3) 하의 유해성 평가, 건강 영향 연구, 운영 계획 및 감독 계획의 결과를 노동보호복지국 국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자에게 제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의 성과, 유형, 규모에 대한 기준, 방법, 조건, 그리고 운영 기간이 노동부 장관에 의해 정해져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위의 활동을 이

행할 때, 사업주는 권고사항에 따라야 하고, 결과가 승인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8)

4.6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표준 개인보호구를 제공해야 하고, 노동보호복지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2)

4.7 개인보호구 사용 의무

개요/인용

근로자는 작업 기간 내내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장비를 작업 조건 및 특성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때까지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2)

4.8 응급처치 및 복지시설 제공 의무

4.8.1 응급처치의 준비

개요/인용

사업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 하에 발령된 사업장에서 근로복지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에 규정되어 있다.

응급처치를 위한 필수품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 근로자 수 200인 미만 사업장은 열거된 대로 29종의 응급처치 물품이 필요하다

(예: 면, 거즈 붕대, 밴드/자착성 탄력 붕대, 온도계, 지혈 호스, 가위, 핀, 일반적인 의약품).

(2) 근로자 수 200인 이상 사업장

- (1)의 의료 용품 및 의약품
- 응급처치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 용품, 의약품과 함께, 최소 1개의 침상이 갖 추어진 의무실
- 근무 시간 동안 대기하는 대기 간호사 - 최소 1인
- 주 2일 이상 또는 주당 총 업무시간 6시간 이상의 대기 의사

(3)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장

- (1)의 의료 용품 및 의약품
- 응급처치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 용품, 의약품과 함께, 최소 2개의 침상이 갖 추어진 의무실
- 근무 시간 동안 대기하는 대기 간호사 - 최소 2인
- 주 3일 이상 또는 주당 총 업무시간 12시간 이상의 대기 의사
- 비상시 부상을 당한 근로자를 병원이나 의료 시설로 운송할 대기 차량

참고자료

1998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제7장)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 (제2조)

4.8.2 위생 설비

개요/인용

위생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는 건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 수(또는 근로자수당 비)에 맞게 사업장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화장실은 매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

4.8.3 식수

개요/인용

식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깨끗한 식수 공급기가 근로자 수 40인 이하당 1대의 비율로 사업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 (제1조)

4.8.4 휴게실 및 식당

개요/인용

휴게실 및 식당 시설은 사업장에서 근로 복지에 관한 부령, 불기 2548 (2005)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제반 요소

5.1.1 안전보건의 책임 및 준비사항을 구체화하는 정책 또는 계획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하에서 현재 유효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노동부 부령 - No.2, 불기 2553 (2010)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령은 다음 범주의 업종 또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시행된다.

- (1) 광산, 채석장,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
- (2) 선박의 건조를 포함한 물품·자산의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보수, 저장, 개량, 장식, 증설, 개조, 가공, 분해 또는 해체, 발전, 변전, 전력 그 외 에너지의 공급
- (3) 공사의 준비 또는 기초공사를 포함해, 건물, 공항, 철도, 전철, 항만, 도크, 부두, 수로, 도로, 댐, 터널, 교량, 배수관, 송수관, 전선, 전화, 전력, 가스, 수도 또는 기타 공사의 건설, 증설, 설치, 수리, 보수, 개조 및 해체
- (4) 육로, 수로, 항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의 운송
- (5) 주유소

- (6) 호텔
- (7) 백화점
- (8) 의료기관
- (9) 금융기관
- (10) 의료검사기관
- (11) 오락, 휴양 또는 스포츠 시설
- (12)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실
- (13) 상기 (1) ~ (12)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기관
- (14)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활동

앞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는 적어도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방침
-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
- (3) 산업안전보건 계획과 실시
- (4)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의 검토 및 평가
- (5)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

사업주는 적어도 연 1회의 빈도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갱신 및 개선해야 한다. 사업주는 또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 실시 감독
-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 실시에 참여하도록 장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8)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No.2), 불기 2553 (2010).

5.1.2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현재 유효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 임명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부령에 의해 “안전 관리자”로 칭함)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에 의해 임명된 근로자이다. 이 부령 하에서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의 안전 관리자가 있다.

- (1) 감독자급
- (2) 관리자급
- (3) 기능공급
- (4) 최고 기능공급
- (5) 전문가급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13)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부령, 불기 2549 (2006).

5.1.3 위험성 평가서

개요/인용

위험성 평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8, § 32)

5.1.4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

개요/인용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요구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장)

5.1.5 위험성 교육훈련 및 안내

개요/인용

사업장에서의 위험성에 대해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요구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16, § 17)

5.1.6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

비고/해설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는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의 관리를 위한 기준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내에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의 일부여야 한다.

5.1.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과의 협의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로자가 결함이나 피해를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 관리자, 감독자 또는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보고를 받은 안전 관리자, 감독자 또는 임원은 이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독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정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결함이나 피해를 인식한 경우, 감독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감독자는 임원이나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1)

5.2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또는 기준을 이행할 의무

개요/인용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노동부 부령 - No.2, 불기 2553 (2010)에서 다루는 범주 중 하나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OSH-MS)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에는 적어도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방침
-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
- (3) 산업안전보건 계획과 실시
- (4)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OSH-MS)의 검토 및 평가
- (5)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

비고/해설

현재 특정 업종 또는 관련 위험성에 대한 특정 시스템이 없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No.2), 불기 2553 (2010). (제22/1조)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6.1 산업안전보건 역량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관리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다. 이것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자격 있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문서와 보고 또한 이 법하의 부령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해 검토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9, § 11)

6.1.1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요건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법 하에 발령된 부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증진시키

기 위해 훈련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 측정, 조사, 시험, 인증,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해진 인원은 노동보호복지국 산업안전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업무를 해야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노동보호복지국장이 발급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9)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의 자격 요건

개요/인용

등록 신청자의 자격, 등록, 대체면허의 발급, 등록의 취소, 서비스 수수료 지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방법은 부령에 규정된 기준, 방법, 조건에 따라야 한다.

면허 신청, 면허 발급, 전문가의 자격, 피면허자의 활동에 대한 관리, 면허 갱신, 대체면허의 발급, 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부령에 규정된 기준, 방법, 조건에 따라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9)

6.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하에서 현재 유효한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의 사양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 임명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부령에 의해 “안전 관리자”로 칭해짐)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에 의해 임명된 근로자이다. 이 부령 하에서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의 안전 관리자가 있다.

- (1) 감독자급
- (2) 관리자급

- (3) 기능공급
- (4) 최고 기능공급
- (5) 전문가급

안전 관리자의 수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의무가 다르다(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수준별 안전 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요구사항은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13)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조)

6.2.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이 요구되는 종업원 수

개요/인용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다음 범주의 업종 또는 사업장에 시행되어야 한다.

- (1) 광산, 채석장,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
- (2) 선박의 건조를 포함한 물품 · 자산의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보수, 저장, 개량, 장식, 증설, 개조, 가공, 분해 또는 해체, 발전, 변전, 전력 그 외 에너지의 공급
- (3) 공사의 준비 또는 기초공사를 포함해, 건물, 공항, 철도, 전철, 항만, 도크, 부두, 수로, 도로, 댐, 터널, 교량, 배수관, 송수관, 전선, 전화, 전력, 가스, 수도 또는 기타 공사의 건설, 증설, 설치, 수리, 보수, 개조 및 해체
- (4) 육로, 수로, 항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의 운송
- (5) 주유소
- (6) 호텔
- (7) 백화점
- (8) 의료기관
- (9) 금융기관
- (10) 의료검사기관
- (11) 오락, 휴양 또는 스포츠 시설
- (12)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실
- (13) 상기 (1)~(12)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기관
- (14)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활동

(1)~(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시설 및 (6)~(14)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각 작업 단위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의 감독자급의 안전 관리자가 될 근로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자는 이 부령 제8조에 명시된 자격을 가져야 한다.

(2)~(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0-49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제11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를 시설의 기능공급의 안전 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임명된 근로자는 규정된 시간 이상, 즉 하루에 1시간 이상 안전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미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있는 시설은 면제된다.

(2)~(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50-99인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제14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를 시설의 최고 기능공급의 안전 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이미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있는 시설은 면제된다.

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1) 범주의 시설과 (2)~(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제17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적어도 한 명의 근로자를 시설의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1)~(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시설과 (6)~(14)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제20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관리자급의 모든 근로자를 시설의 관리자급의 안전 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관리자급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관리자급의 안전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시설 내에 산업안전보건환경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인수, 위원 수는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이 부령 제25조에 나열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1)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시설과 (2)~(5)의 범주에 속하고 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팀(시설의 고위 임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과 예산을 갖춘 부서의 형태)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차후 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이 산업안전보건팀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1장)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의 일반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는 자신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의 운영과 증진에 있어 사업주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6)

7.2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비고/해설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에게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7.3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자의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0조와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원 또는 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기타 담당자를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감독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정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결함이나 피해를 인식한 경우, 감독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나 이를 인식한 직후 할당된 책임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감독자는 임원이나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0, § 21)

7.4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위직급자의 의무

개요/인용

상위직급자 또는 임원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사업주 및 다른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0, § 21)

7.5 자신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비고/해설

태국에서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에 따라 사업주의 신분도 근로자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공식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보호복지국은 최근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비공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비공식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장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고시: 비공식 근로자의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지침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의 준수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장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관련 부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환경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장)

7.7 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해 질문할 권리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하에서 현재 유효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입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새롭고 다른 작업 특성을 가진 업무나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조건에 배치할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대한 훈련을 마련하고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업무 시작 전에 예방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비고/해설

따라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의 위험성과 예방조치에 대해 아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14, § 17)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제5조와 제6조)

7.8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

비고/해설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은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1)

7.9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의 전환배치 권리

개요/인용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에 따라, 정부 병원 또는 정부가 인정한 병원 등에서 근로자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 조치해야 한다.

비고/해설

그러나 이 부령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나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10조)

7.9.1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 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업 및 협조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환경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3장)

8.1.1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정책, 업무 계획 또는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작성해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 (2)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부령과 고시, 규칙의 발표에 관해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사

항을 제공한다.

- (3)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해 정부 기관들에 의견을 제시한다.
- (4) 이 법의 제12조, 제33(3)조, 제40(2)조에 따라 항소를 결정한다.
- (5) 이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노동부 장관에 의해 정해진 다른 조치를 이행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5)

8.1.2 구성 및 위원장

개요/인용

노동부에 의해 임명된 이 삼자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부 사무차관 (위원장)
- (2) 공해방지국장
- (3) 질병관리국장
- (4) 기술개발국장
- (5) 공공사업과 도시계획국장
- (6) 산업작업국장
- (7) 지방행정국장
- (8) 노동보호복지국장
- (9) 사업주 단체의 8인의 대표
- (10) 근로자 단체의 8인의 대표
- (11) 5인의 자격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 (12) 산업안전보건부 부장 (비서)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4)

8.2 위험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로자는 안전보건 조성을 위해 자신의 작업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결함이나 피해를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 관리자, 감독자 또는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보고를 받은 안전

관리자, 감독자 또는 임원은 이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독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정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결함이나 피해를 인식한 경우, 감독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나 이를 인식한 직후 할당된 책임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감독자는 임원이나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21)

8.3 안전보건 관련 대표자를 선임할 근로자의 권리

개요/인용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8.3.1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종업원 수 조건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의 수는 총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1) 근로자 수가 50-99인인 사업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2인의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 (2) 근로자 수가 100-499인인 사업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3인의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 (3)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5인의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장)

8.3.2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적격성 조건

개요/인용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들의 대표인 이 위원회 위원은 노동보호복지국장이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마련한 선거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4조)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기능, 권리 및 권한

8.4.1 사업장 검사권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개요/인용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어도 월 1회의 산업안전보건 성과 조사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험의 통계 조사를 포함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에 의해 마련된 선거절차를 통해 선발된 근로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부령, 불기 2549 (2006). (제25조)

8.4.3 면담 출석권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권리

8.4.5 감독관 동행권

8.4.6 시설 사용권

8.4.7 직무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8.4.8 시정통지 교부권

개요/인용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무 또는 서비스 수령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온 근로자, 계약자, 외부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의 준수, 개선과 잘못의 시정의 조치 또는 수단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권고할 의무가 있다.

비고/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에 의해 마련된 선거절차를 통해 선발된 근로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5조)

8.4.9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8.4.10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권리

8.5 사외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처리할 권리

8.5.1 사업장 출입권

8.5.2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권리

8.5.3 근로자들과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이행 조치를 개시할 권리

8.6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개요/인용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환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3조)

8.6.1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참여

개요/인용

이 위원회는 사업주에 의해 마련된 선거절차를 통해 선발된 근로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4조)

8.6.2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설치 조건

개요/인용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총 근로자 수에 따라야 한다.

- (1) 근로자 수가 50-99인 사업장은 적어도 5인의 위원회 위원을 가져야 한다. 5인의 위원은 위원장인 관리자급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 지휘자급인 사업주의 대표, 위원인 2인의 근로자 대표, 위원회의 위원이자 비서인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로 구성된다.
- (2) 근로자 수가 100-499인 사업장은 적어도 7인의 위원회 위원을 가져야 한다. 7인의 위원은 위원장인 관리자급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 지휘자급인 2인의 사업주의 대표, 위원인 3인의 근로자 대표, 위원회의 위원이자 비서인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로 구성된다.
- (3)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적어도 11인의 위원회 위원을 가져야 한다. 11인의 위원은 위원장인 관리자급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 지휘자급인 4인의 사업주의 대표, 위원인 5인의 근로자 대표, 위원회의 위원이자 비서인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3조)

8.6.3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

개요/인용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1) 작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 질병 또는 불쾌감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외 안전에 관한 정책과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제시할 의무
- (2) 근무 또는 서비스 수령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온 근로자, 계약자, 외부인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의 준수, 개선과 잘못된 시정의 조치 또는 수단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권고할 의무
- (3)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할 의무
- (4)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규정과 지침을 고려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제시할 의무
- (5)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험의 통계를 조사할 의무
- (6) 사업주에게 제언을 주기 위해, 모든 수준의 근로자, 감독자, 임원, 사업주의 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프로젝트 또는 훈련 계획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프로젝트 또는 훈련 계획을 고려할 의무
- (7)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에 대한 보고를 모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 체계화할 의무
- (8) 사업주에게 제시된 보고를 추적조사할 의무
- (9) 위원회 활동 1년이 완료된 때, 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와 장애, 제안사항을 명시한 연례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할 의무
- (10)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성과의 평가 의무
- (11) 사업주에 의해 정해진 다른 산업안전 활동을 수행할 의무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5조)

8.6.4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업무 기록

개요/인용

제40조 및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의 사본을 작성해 사업장에 그 사본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 동안 보관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단과 의무, 책임이 기재된 리스트의 사본을 노동보호복지국 또는 노동보호복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 위원회의 변경 및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안전 관리자의 교

체의 증거를 사업장에서 그들의 책임사항을 기재해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관할 근로 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40조와 제41조)

8.6.5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의사록 공유

개요/인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적어도 월 1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어야 한다. 모든 위원은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하고, 전 위원은 예정대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의록이 각 위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제39조는 사업주에게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된 장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의안을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7조와 제39조)

8.7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교육

개요/인용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주는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보호복지국장이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법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28조)

8.8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직무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

9.1 생물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생물학적 유해성은 산업 유해성으로 간주된다.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하에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는 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특정 오염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걸린 감염 또는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 포함).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에 따라 생물학적 유해성은 또한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된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조)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3)조)

9.2 화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화학적 유해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에 따라 발령된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56 (2013)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8, § 32)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56 (2013).

9.2.1 취급, 보관, 식별표시 및 사용

개요/인용

요구사항이 이 부령하의 “제2장 - 식별표시”와 “제4장 - 유해 화학물질의 보관, 취급, 운반”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56 (2013). (제2장과 제4장)

9.2.2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화학물질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

비고/해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화학물질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는 이 부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자료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56 (2013). (제12조, 제13조)

9.3 인체공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인체공학적 유해성은 태국에서 일반적이며, 근골격계 장애와 요통 같은 인체공학 관련 상해가 많이 보고되는 증례라는 것이 업무상 상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체공학 원칙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표된 특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없다. 유일한 관련 법규는 1998년 노동보호법 하에 발령된 들기 작업의 최대허용하중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이다. 이 부령은 다음과 같이 하중 한계를 정했다.

- 남성 근로자는 55kg 이하
-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남성 근로자(15-18세)는 25kg 이하
- 미성년 여성 근로자(15-18세)는 20kg 이하

참고자료

들기 작업의 최대허용하중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7 (2004).

9.4 물리적 유해성

9.4.1 살충제

개요/인용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질병”에 따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서 살충제는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살충제는 또한 노출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있다. 이 목록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하에 발표된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에 따라 발표되었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조)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 (제3(5)조)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1)조 - 제35항)

9.4.2 이온화 방사선

개요/인용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이온화 방사선 관련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는 이온화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거나 방사능 위험성을 수반하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근로자들의 방사선 노출 모니터링, 건강 감독, 사업장에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이온화 방사선”에 따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서 이온화 방사선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인자이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하에서 이온화 방사선은 또한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특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업무 관련 위험 요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비고/해설

이 부령은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의거하여 발령되었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이온화 방사선 관련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2)조 - 제4항)

9.4.3 진동 및 소음

개요/인용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소음을 수반하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소음의 측정과 사업장에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의 이행과 청력 보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진동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부령은 없다. 그러나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따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서 진동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인자이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하에서 진동은 또한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특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업무 관련 위험 요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비고/해설

이 부령은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의거하여 발령되었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4)조)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3장)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2)조 - 제2 1, 2항)

9.4.4 고소작업

9.4.5 밀폐공간 내의 작업

개요/인용

밀폐공간에서 산업 안전, 보건, 그리고 작업환경의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는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에서 실시되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밀폐공간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준비와 절차가 포함된다(예: 훈련, 작업에 들어가기 전 및 작업 중 독성 대기의 모니터링, 필요한 장비 등).

비고/해설

이 부령은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의거하여 발령되었다.

참고자료

밀폐공간에서 산업 안전, 보건, 그리고 작업환경의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7 (2004).

9.4.6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하에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 법의 제6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을 피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적절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6)

9.4.7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개요/인용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은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열 노출의 측정과 사업장에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의 이행이 포함된다.

현재, 추운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부령은 없다. 그러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서 추운 환경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인자이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하에서 극한 추위는 또한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특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업무 관련 위험 요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비고/해설

태국은 열대 기후이고 온도가 통상 19~38℃이기 때문에, 추운 환경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냉동식품 가공/제조, 창고 등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4)조)

열, 빛, 소음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제1장)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2)조 - 제9항)

9.4.8 화재 위험성

개요/인용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5 (2012)는 사업장에서 위험성의 예방 및 관리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화재 예방 및 소화 계획의 개발, 화재 경보 시스템과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하는 것과 훈련, 보고 등이 포함된다.

비고/해설

이 부령은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에 의거하여 발령되었다.

참고자료

화재 예방 및 소화 관련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55 (2012).

9.4.9 연초류

비고/해설

사업장에서 연초류에 관한 사항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9.4.10 석면

개요/인용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따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서 석면은 업무상 질병(석면증)을 일으키는 화학적 인자이다.

석면은 또한 노출 위험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있다. 이 목록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하에 발령된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에 따라 발표되었다.

비고/해설

현재, 온석면 (백석면)만 엄격한 관리 하에 여전히 산업용으로 허용된다. 다른 형태의 석면은 이미 금지되어 있다.

참고자료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조(1))

화학적 위험 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불기 2552 (2009). (제3(6)조)

노동부 고시: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작업의 성격 또는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제3(4)조 - 제1항)

9.4.11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개요/인용

현재,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하에 유효한 관련 부령은 작업 중 나노물질 노출과 나노기술 관련 다른 위험성을 다루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비고/해설

그러나 나노물질 안전관리와 윤리에 관한 국가전략계획(2012-2016)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노동보호복지국을 포함한 20여 개의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국가나노기술센터(Nanotec)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계획은 나노기술 응용의 증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노물질과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한 나노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나노물질 안전관리와 윤리에 관한 국가전략계획 (2012-2016)

9.4.12 사업장 내 에이즈 감염

비고/해설

사업장 내 에이즈 감염에 대한 사항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9.5 심리사회적 유해성

9.5.1 심리사회적 위험성

개요/인용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모두를 포함하도록 “산업 안전, 보건, 환경”을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 심리사회적 유해성 또는 위험성 관련해 특정 요구사항은 없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4)

9.5.2 직장 폭력

9.6 기타 유해물질

9.7 기계류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9.7.1 기계류 및 공구 관련 위험성

개요/인용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는 금속 스탬핑 기계, 전기 용접기, 가스 용접기, 보일러, 지게차, 엘리베이터, 다양한 형태의 크레인 등 기계류 및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특정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고/해설

이 부령은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의거하여 발령되었다.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9.7.2 기계류 조작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기계류 설계자 및 제조사의 의무

비고/해설

기계류 및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기계류의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는 이 부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9.7.3 기계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비고/해설

사업주는 기계류 및 공구 설계자가 제공한 안전 정보 또는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비록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조자가 기계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된다.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제11조, 96-97)

9.7.4 승인/인증된 공급자로부터 또는 승인/인증된 경우에만 기계류를 구입해야 하는 의무

개요/인용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은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기계류 및 공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전기 기계는 현지의 전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보일러는 인정되는 전문기관이 발행한 산업 기준(예: ISO, ASME, JIS, DIN, TRD, BS, EN)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제83조)

9.7.5 기계류 및 장비 유지보수

개요/인용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은 사업주에게 기계류 및 장비,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장치 또는 기타 보호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해당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제5조-제6조)

9.7.5.1 적용 장비 목록

개요/인용

장비 목록은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한 상태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장비의 예는 나와 있다.

참고자료

기계, 크레인, 보일러 관련 산업안전, 보건, 작업 환경 측면의 관리에 관한 부령, 불기 2552 (2009). (제2조)

9.8 특정 취약 근로자의 보호 규정

9.8.1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

개요/인용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에 관한 규정이 노동보호법, 불기 2541 (1998)에 규정되어 있다. 제39조는 사업주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22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근무나,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또는 다음의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진동이 있는 플랜트에서 일하거나 진동이 있는 장비를 사용해 일하는 것
- (2) 기계력에 의한 탈 것을 조작하거나 이에 타는 것
- (3) 15kg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거나 머리카 등에 이거나 당기거나 미는 것
- (4) 운항하는 배 안에서 일하는 것
- (5) 기타 부령에 의해 규정된 작업

참고자료

1998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 39)

9.8.2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

비고/해설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은 이 노동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9.8.3 특정 작업, 과업 또는 교대근무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개요/인용

1998년 노동보호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다음의 작업에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1) 지하, 수중, 동굴, 산의 터널 또는 분화구에서 작업해야 하는 채광이나 건설 공사. 단, 작업 조건이 근로자의 건강 또는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지상에서 1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 위에서 하는 작업
- (3)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제조 또는 운반
- (4) 기타 부령에 의해 규정된 작업

참고자료

1998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 38)

9.8.4 특정 작업, 과업 및 교대근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제한

개요/인용

1998년 노동보호법 제44조에는 사업주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7조에는 사업주가 18세 미만 근로자를 22시부터 6시까지 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노동보호복지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허가서가 부여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47조에는 사업주가 18세 미만 근로자를 시간외 근무를 시키거나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9조는 사업주에게 다음 작업 중 어떤 작업을 위해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1) 금속의 제련, 취련, 주조, 압연
- (2) 금속 압형
- (3) 건강과 안전에 유해할 수 있는 열, 추위, 진동, 소음, 부적절한 조명 조건을 수반하는 작업
- (4)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
- (5)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타 미생물 포함 독성 미생물에 관련되는 작업
- (6) 주유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하고, 유독성 물질,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에 관련되는 작업
- (7)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제어하는 작업
- (8)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톱을 사용하는 작업
- (9) 지하, 수중, 동굴, 산의 터널 또는 분화구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작업
- (10) 방사능에 관련되는 작업
- (11) 작동 중인 기계 또는 엔진의 청소
- (12) 지상에서 1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 하는 작업
- (13) 기타 부령에 의해 규정된 작업

참고자료

1998년 노동보호법 (불기 2541). (§ 44, § 47-49)

10. 사고/준사고 및 질병의 기록, 신고 및 조사

10.1 업무상 사고, 아차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기록 및 조사할 의무

10.1.1 업무상 사고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하에 현재 유효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관리의 기준 제정에 관한 노동부 부령, 불기 2549 (2006)은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업무상 사고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사건을 15일 이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동보호복지국장(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기록과 원인 조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추후 검사를 위해 정보의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된다.

참고자료

산업 안전, 위생,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부령, 불기 2549 (2006).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06.15.

10.1.2 아차사고

개요/인용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음.

10.1.3 업무상 질병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재 유효한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4.4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주는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예방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상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조사에 대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각 근로자의 기록은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고소가 없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질병이나 유해성 관련 소송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주의 사무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고소나 소송이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주는 이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해로운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4)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령, 불기 2547 (2004). (제2장)

10.2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설에 심각한 사고가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위험에 직면할 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를 알게 되자마자 전화나 팩스, 또는 다른 수단으로 지정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망의 원인을 포함하여 충분히 자세하게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화재, 폭발, 누출, 또는 다른 심각한 사건의 결과로 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작업을 중지해야 하거나 사업장의 인원이 위험이나 상해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를 알게 되자마자 전화나 팩스, 또는 다른 수단으로 지정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해 그러한 위험의 원인과 피해 또는 상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 (3) 근로자가 근로자보상법에 따른 위험이나 질병에 직면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보상법에 따라 사회보장청에 그러한 위험이나 질병을 보고한 후, 사업주는 또한 7일 이내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에게 이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 보고서는 노동보호복지국장이 정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신고한 후, 검사 및 유해성 예방조치가 지체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4)

근로자보상법, 불기 2537, 1994.06.15. (§ 48)

11.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감독 및 시행

11.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

개요/인용

모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이다.

2012년에 노동부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하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에 관한 부령 제123/2555호를 발표했다. 다음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1) 노동보호복지국과 노동부 상설사무국의 임원과 수석 전문가
- (2) 주의 노동 보호복지 사무소(또는 방콕 지역 사무소)의 장
- (3) 적어도 산업안전보건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규정된 다른 자격을 갖춘 기술직 노동 관련 공무원 (실무 수준 또는 그 이상)
- (4) 주지사, 부지사, 주지사 대리, 주의 공중보건청장, 주의 재난방재완화청장, 보안관, 지역 실무공무원
- (5) 산업환경질병국장 및 이 국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 기술직 공무원, 의학자 (전문가급 및 그 이상)
- (6) 방콕 도시권 고위 공무원: 토목국장, 보건국장, 지구장 및 부지구장, 환경과학자와 토목기사
- (7) 연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위한 태국왕실해군 장교(중위 또는 그 이상)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5장)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하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에 관한 부령 제123/2555호

11.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권한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5장)

11.2.1 사업장 출입권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근무 시간 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사업주의 시설이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5)

11.2.2 검사, 시험 및 문의할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다음 권한이 있다.

-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작업 조건의 사진과 소리를 조사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 (2) 시설의 기계류, 작업 조건과 환경을 측정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장비나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 (3) 산업안전보건 분석을 위해 표본 재료나 제품을 수집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5)

11.2.3 조사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관련되는 증거 문서를 검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보호국장에게 신속하게 유해성 예방조치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해, 사실에 대해 문의하고 권한 범위 내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5)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

비고/해설

검사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의무는 제5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시설에 개선이나 조치를 위한 조언이나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11.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시행 권한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5장)

11.3.1 명령 또는 통지의 교부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주, 근로자, 또는 관련자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령된 부령을 위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거나 작업 조건, 건물, 시설, 기계류, 또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가 근로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이러한 위반자에게 위반 행위를 중지하거나 30일 이내에 시정, 개선 또는 규정을 적절히 준수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30일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완수할 수 없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2회 이내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각 연장 기간은 그 기간의 원래 예정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노동보호복지국장(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허가 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기계류나 장비, 건물,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 묶거나 재료에 날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6)

11.3.2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금고나 400,000바트(약 US\$ 12,5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공무원이 위반자가 금고로 처벌받거나 법정에서 고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공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 (1) 방콕 도시권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보호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 (2) 주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지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 (일반적으로 직위 별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합의가 될 수 있는 위반이나 위반자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이 사건을 7일 이내에 노동보호국장 또는 주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위반자가 30일 이내에 합의된 금액에 따라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반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에 동의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8장)

11.3.3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

개요/인용

공장 조업을 위한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은 산업부에 의해 관리되는 공장법, 불기 2535 (1992)에 의거한 권한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장법, 불기 2535 (1992).

11.3.4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작업 조건과 환경이 근로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이러한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시정, 개선 또는 적절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6)

11.3.5 기소 개시 권한

비고/해설

§ 36에 기술된 절차의 최종 기한에 도달했는데 사업주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기소 개시 권한을 가진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6)

11.3.6 기소 수행 권한

비고/해설

기소는 법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1.3.7 기타 집행 권한

개요/인용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보호복지국이 그 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노동보호복지국장이나 그가 위임한 자는 그러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정조치를 이행할 자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점에 관해 사업주는 이러한 인수에 대해 실제 지불된 금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업 비용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호복지국장은 이러한 비용 지불을 위해 사용될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수, 공매 명령서를 교부할 권한을 가진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 37)

11.4 법원의 제재 조치

11.4.1 법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위반자가 법인일 때, 해당 법인에 의한 위반이 어떤 사람의 지시나 행위 또는 전무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사업 이행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명령의 무시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 경우, 이러한 자가 해당 위반에 대해 정해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8장)

11.4.2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개요/인용

제53조 -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발령된 부령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금고나 400,000바트(약 US\$ 12,5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54조 -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발령된 부령에 따라 문서 증거 또는 보고서의 인증 또는 심사를 담당하는 자가 문서 또는 보고서의 인증이나 심사 시 허위 기재를 경우, 이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55조 - 등록이나 면허 없이 측정, 검사, 시험, 인증, 위험성 평가, 훈련 또는 자문을 제공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56조 - 제13조, 제16조 또는 제32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57조 - 제14조 또는 제34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00바트(약 US\$ 1,562)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제58조 -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3개월 이하의 금고나 100,000바트(약 US\$ 3,125)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59조 - 제18(1)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금고나 400,000바트 (약 US\$ 12,5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0조 - 제18(2)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나 100,000바트(약 US\$

3,125)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하의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7(1)하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2조 - 제22(1)조 또는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나 100,000바트(약 US\$ 3,125)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3조 - 제33조하의 면허 없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역할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4조 - 제35조 또는 제36(2)조하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돕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5조 - 제36(1)조하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66조 -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명령 준수 기간 중에 조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업 중지 명령된 작업을 재개하거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에 의해 묶여 있거나 스탬프가 찍혀 있는 재료를 해제한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800,000바트(약 US\$ 25,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하고, 명령이 준수될 때까지 매일 5,000바트(약 US\$ 156) 이하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제67조 - 제39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이 위반의 발생 시마다 50,000바트(약 US\$ 1,562)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제68조 - 제42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200,000바트(약 US\$ 6,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제70조 - 이 법에 따른 업무의 결과로 얻게 되거나 확인하게 된,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기밀인 사업주의 영업과 관련되는 사실을 공개한 자는 그 사실이 이 법상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나 노동 보호, 노사관계의 이익을 위해서나 사건의 조사나 검토를 위해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하의 금고나 40,000바트(약 US\$ 1,25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8장)

11.4.3 비금전적 제재

비고/해설

금고 이외의 비금전적 제재는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11.4.4 형사상 책임

개요/인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조항도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가진 자의 부적절한 의무 이행의 결과로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형법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8장)

11.4.5 자연인에 대한 금고 기간

개요/인용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한 최대 금고 기간은 2년이다. 금고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11.4.2에서 금전적 벌칙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참고자료

안전, 산업위생과 작업장 환경법, 불기 2554 (2011). (제8장)